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154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1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나20293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종하, 오정한, 정태학

피고, 피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촌

담당변호사 방이엽, 김영림, 성낙근, 황민규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F

3. 주식회사 G

4. 주식회사 H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신용진, 지철호

판 결 선 고 2024. 8.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나2029394(본소), 2022나 202940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유지관리계측 및 결과분석 용역계약, 직결궤도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용역계약 관련 각 비용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변상이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변상과 관련한 원인 규명,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내지 묵시적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 A이 이 사건 변상의 보수공사인 마이크로파일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유지관리계측 및 결과분석과 직결궤도 안전성 검토 및 설계를 위하여 ① 2022. 2. 10. 주식회사 V와 사이에 대금 11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와 같다)의 유지관리계측 용역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② 같은 날 사단법인 O와 사이에 대금 15,400,000원의 유지관리계측 결과분석 용역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③

2022. 2. 28.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사이에 대금 88,660,000원의 직결계도 안정성 검토 용역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④ 같은 날 P와 사이에 대금 25,630,000원의 직결계도 설계 용역계약(이하 '제4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은 제1계약에 따라 2022. 4. 29.부터 2022. 8. 31.까지 3회에 걸쳐 주식회사 V에 합계 110,550,000원(= 100,500,000원 × 1.1), 제2계약에 따라 2022. 5. 31. 사단법인 O에 10,010,000원(= 9,100,000원 × 1.1), 제3계약에 따라 2022. 12.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50,600,000원(= 46,000,000원 × 1.1), 제4계약에 따라 2022. 12. 23. P에 12,100,000원(= 11,000,000원 × 1.1)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지출하였거나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공사 등이 완료되어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고 원고들이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제1 내지 제4계약의 용역대금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미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위 각 금액만을 이 사건 변상과 관련한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원고들의 각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제1 내지 제4계약의 용역대금 중 원고들이 이미 지출하였음을 인정한 금액만을 이 사건 변상과 관련한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각 용역대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2022. 7. 29.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제1계약의 대금을 219,890,000원으로, 사단법인 O와 사이에 제2계약의 대금을 30,800,000원으로 각 변경함과 아울러 위 각 계약의 기간을 당초 2022. 7. 31.에서 2023. 7. 31.까지로 연장한 점, ② 제3, 4계약의 기간은 2022. 12. 31.에, 위와 같이 변경된 제1, 2계약의 기간은 2023. 7. 31.에 각 종료되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3. 11. 9. 이전에 위 각 계약의 기간이 모두 종료되었는바, 그렇다면 통상 위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도 이미 완료되어 추가적인 용역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도 원심에서 그 용역의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들이 그 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원심 감정인 J의 2023. 9. 6. 자 감정보완회신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1 내지 제4계약에 따른 각 용역대금의 합계액 전부가

‘실비’임을 전제로 위 금액을 위 각 계약 관련 적정공사비로 산정하였고,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2023. 10.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적정공사비로 인정된 금원 전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점, ④ 그런데 원심은 원심 감정인 J의 2023. 2. 1. 자 감정결과 중 제1 내지 제4계약의 집행현황에 기재된 2022. 12. 23. 자 기준 지출 비용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위 각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23. 9. 6. 자 감정보완회신결과에는 2022. 12. 23. 이후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나 그 계약이행 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2022. 12. 23. 이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3. 11. 9. 이전에 제1 내지 제4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였거나,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되어 원고들이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위 2023. 9. 6. 자 감정보완회신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위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액을 전부 적정공사비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 제1, 2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경위가 무엇인지, 제1 내지 제4계약의 기간이 이미 모두 종료되었는데, 원고들이 위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는지,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어 원고들이 그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위 2023. 9. 6. 자 감정보완회신결과가 원고들이 제1 내지 제4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출하였거나 그 이행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고 그 입증을 촉구하거나 감정인 등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 2계약의 변경된 내용들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도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고들이 2022. 12. 23. 자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만을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석명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상의 원인 규명,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등을

위한 도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각 용역비용 및 각 보수공사비용에 일반관리비(6%) 및 이윤(15%)을 더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포함)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약정 내지 묵시적 합의에 따라 비용을 청구함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비용을 청구하였지만, 원심은 위 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판단 순서를 정한 의미로 보아 판단하였다. 위 약정금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병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제1 내지 제4계약 관련 약정 내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각 비용청구 부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제1 내지 제4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각 비용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제1 내지 제4계약 관련 각 비용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신숙희